

【필수】 불법·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

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 3 조 제 3 항에 따라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, 자금세탁행위,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,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,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본인은 위 안내에 대해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 이해하였으며, 동법 제 3 조 제 6 항에 따라 설명들었음을 확인합니다.